

## 「비과세종합저축」 특약

### 제1조(약관의 적용)

비과세종합저축(이하 「저축」이라 한다)의 거래 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,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, 은행이 취급하는 각종 예금·신탁·채권 등(이하 「예금 등」이라 한다)의 약관(특약 포함)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# 제2조(가입대상자)

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(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1.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: 만 61세 이상인 거주자,  
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: 만 62세 이상인 거주자,  
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: 만 63세 이상인 거주자,  
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: 만 64세 이상인 거주자,  
2019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경우: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
2.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3.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 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
4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
5.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
6.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

### 제3조(대상예금 등)

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예금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예금 등과 각 취급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예금 등은 제외합니다.

1. 종서로 발행되고 유통이 가능한 예금 : CD, 표지어음, 무기명정기예금 등
2. 어음·수표 등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 예금 : 당좌예금, 가계당좌예금 등
3. 조세특례제한법상 등에 따라 기 취급 중인 비과세 예금 등
4. 외화예금

### 제4조(예치한도)

- ① 이 저축으로 거래하는 모든 예금 등 계좌의 예치한도는 원금을 합하여 5천만원(다만, 세금 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② 이 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등은 1인 당 한도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최종 이자원가로 인하여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축한도에 포함합니다.
- ③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이 저축의 한도로 정할 수 없습니다.

## 제5조(예치한도 산정)

- ① 거치식예금 등은 거래처가 가입한 예치원금으로 합니다.
- ② 정액(정기)적립식예금 등은 월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.
- ③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, 자유적립식 및 추가 불입이 가능한 거치식예금 등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합니다.

## 제6조(예치한도 변경)

이 저축의 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
## 제7조(비과세처리)

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한다.

## 제8조(표시방법)

이 저축가입자는 신규 가입 시 「비과세종합저축」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은행은 통장의 표지·내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「비과세종합저축」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
## 제9조(적용이율)

이 저축으로 가입한 각 예금 등의 적용이율은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## 제10조(상속에 의한 특별중도해지)

거래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, 상속인은 은행에 이 저축의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, 이때 은행은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. 다만, 신탁·채권 등은 개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 제11조(저축의 전환여부)

이 저축과 이 저축이 아닌 예금 등은 상호 전환할 수 없습니다.

## 제12조(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)

제11조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중복하여 가입한 때에는 거래처가 이 저축으로 선택한 계좌 이외의 계좌에 대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일반과세계좌로 전환하여야 합니다.

## 제13조(명의변경 등)

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.

## 제14조(예치한도 초과 입금 제한에 따른 책임)

예치한도 초과로 입금(무통장 입금 및 타행환송금 포함)이 되지 않아 수표의 지급결제 불가,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,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부칙(시행일 : 2015.1.1.)

- ① 【시행일】 본 특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- ② 【과세처리에 대한 경과조치】 이 특약의 시행 전 기준 ‘생계형저축’에 가입한 자의 이자소득 등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합니다. 다만, 2015년 이후 만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만기 종료 이후의 이자소득 등은 과세합니다.